

3. 제6장(관세 및 무역원활화)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 6 장
통관 및 무역원활화

제6.1조
목적 및 원칙

1.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양자 및 다자 간 관세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과 원칙을 기반으로 협력하고, 상품에 대한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를 채택하고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가. 상품에 대한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가 효율적이고 비례적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관리 및 선별절차를 유지하면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2)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무역 제한적이지 않도록 한다.
- 3) 각 당사국은 수입, 수출 및 통과 사안을 포함하여 국경통제에 관여하는 자국의 관세 당국 및 기관이 협력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할 것을 보장한다. 그리고
- 4) 각 당사국은 관세사의 이용이 선택적하도록 규정한다.

나. 양 당사국이 수용한 국제 무역 및 관세 관련 합의문서와 표준은,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인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합의문서와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의 기초가 된다.

- 다. 요건과 절차는 수입자, 수출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도록 한다.
- 라. 각 당사국은 새로운 또는 개정되는 중요한 요건과 절차의 채택 이전에 이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 공동체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 대표와 시의 적절하게 협의한다.
- 마. 위험관리 원칙 또는 절차는 주목할 만한 거래에 준수노력을 집중하도록 적용된다.
- 바.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된 무역원활화 조치의 적용과 준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그리고
- 사.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한 조치는 국가안보, 보건 및 환경의 보호와 같은 정당한 정책 목적의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제6.2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로 한정하여, 세관에 제시되는 각 지점에 도착 즉시 세관 통제로부터 상품을 반출한다.
 - 가. 세관 제시 전 또는 제시 시에 선적물 내 모든 상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통관 정보 및 서류를 당사국이 접수하고 확인했을 것
 - 나. 그 정보 또는 서류에 대한 추가 심사가 요구되지 않을 것
 - 다. 그 상품 또는 동일 선적물 내 그 밖의 상품이 물리적 검사 또는 심사의 대상이 아닐 것, 그리고

라. 반출을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비관세 규제 확인이 완료되었을 것

2. 통관 정보 또는 서류에 대한 추가 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제6.1조가호, 제6.1조다호 및 제6.1조라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세관에 제시되는 각 지점 도착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세관 통제로부터 상품을 반출한다.

3. 상품의 반출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상품에 대한 모든 물리적 검사 또는 심사가 과도한 지체 없이 가능한 한 빠르게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가.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다른 확인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세관 제시 즉시 반출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물리적 도착 전에 수입신고서 및 적하목록을 포함한 통관 서류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나. 통관 절차, 검사 또는 심사를 완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의 일시적 이동 없이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다. 세관에 제시되기 전, 또는 제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결정 전에 상품의 반출을 허용한다. 다만, 그 밖의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5. 상품을 반출하기 전에,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충분한 보증을 담보, 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반출을 위한 규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당사국이 상품을 반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7. 당사국이 보증을 조건으로 상품의 반출을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보증 금액이 상품의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가 이행될 것을 보장하기 위

하여 요구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나. 자국의 관세당국이 상품의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납득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보증이 해제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 다. 수입자가 상품을 자국 영역으로 또는 자국 영역을 통하여 빈번하게 이동시키는 경우와 같이 적절한 경우에, 수입자에게 복수 반입을 포괄하는 증서를 포함한 현금을 제외한 형태의 보증 제공을 허용한다.

제6.3조 부패성 상품

1. 이 조의 목적상, “부패성 상품”이란 특히 적절한 저장 조건이 없는 경우 그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급속히 부패되는 상품을 말한다.
2. 부패성 상품의 피할 수 있는 손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통상적인 상황에서 다음의 경우로 한정하여 각 세관 제시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세관 통제로부터 부패성 상품을 반출한다.
 - 가. 세관 제시 전 또는 제시 시에 선적물 내 모든 상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통관 정보 및 서류를 당사국이 접수하고 확인했을 것
 - 나. 그 정보 또는 서류에 대한 추가 심사가 요구되지 않을 것
 - 다. 그 상품 또는 동일 선적물 내 그 밖의 상품이 물리적 검사 또는 심사의 대상이 아닐 것, 그리고
 - 라. 반출을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비관세 규제 확인이 완료되었을 것
3. 통관 정보 또는 서류에 대한 추가 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통상적인 상황에서, 제6.2조가호, 제6.2조다호 및 제6.2조라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가급

적 가장 빠른 시간에 세관 통제로부터 부패성 상품을 반출한다.

4. 각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자국 관세 당국의 업무시간 외 부패성 상품의 반출을 규정한다.

5. 상품의 반출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부패성 상품에 대한 모든 물리적 검사 또는 심사가 과도한 지체 없이 가능한 한 빠르게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요구되는 어떠한 검사 또는 심사 일정을 조정하고 수행하는 경우, 부패성 상품에 적절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7. 각 당사국은 반출을 기다리는 동안 부패성 상품의 적절한 저장시설을 마련하거나 수입자가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당국이 수입자가 마련한 모든 저장 시설을 승인하거나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그러한 저장 시설로부터 직접 부패성 상품을 반출한다.

8.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반출을 위한 규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당사국이 상품을 반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제6.4조

간소화된 통관 절차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무역업자 또는 운영자가 더욱 간소화된 통관절차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간소화된 통관 절차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저가 탁송물의 이동을 위한 경우를 포함하여 축소된 일련의 데이터나 증명서류를 포함하는 세관 신고

나. 그러한 수입 상품의 반출 후까지 관세의 납부 연기

- 다. 복수의 수입을 포괄할 수 있는 관세 및 조세를 월별 또는 분기별 간격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것
 - 라. 복수의 수입을 포괄할 수 있는 관세 및 조세의 납부를 위한 일괄 세관 신고, 그리고
 - 마. 감액된 보증의 사용 또는 보증 사용의 면제
3. 양 당사국은 관세위원회를 통하여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한 경제운영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협력한다.

제6.5조

위험관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당국이 검사 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위험 분석과 선별을 위하여, 가능한 한도에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위험관리 시스템을 적용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위험관리 절차를 위하여 1999년도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판과 세계관세기구(이하 “WCO”라 한다) 위험관리 지침을 이용한다.

제6.6조

투명성 및 공표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규정 및 절차를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온라인상에 신속하게 공표한다. 다음은 영어로 공표된다.

- 가. 항구 및 국경통과지점의 세관 운영시간 및 일반 운영절차
- 나. 접촉선 및 정보 문의 절차를 포함한 문의처의 세부사항

다. 관세사가 되기 위한, 관세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또는 관세사 이용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및 절차

라. 요구되는 정보 및 적용 가능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지 않을 상황을 포함하는, 세관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 정정 또는 공개 절차, 그리고

마.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항구, 공항 및 그 밖의 반입지점 절차를 포함한다), 그리고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국경기관과 무역업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 간의 정기적인 협의를 규정하도록 노력한다.

3. 각 당사국은 새로운 또는 개정된 관세법 및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가능한 한 조기에 온라인에 공표되거나, 그에 관한 정보가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4. 제3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관세율의 변경

나. 완화 효과가 있는 조치

다. 제3항 준수의 결과로 그 효과가 저해될 조치

라. 긴급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조치, 또는

마. 그 당사국 법의 사소한 변경

5.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문의를 다루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설치하거나 유지한다.

6. 당사국은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구되는 양식의 제공에 대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요

구하지 않는다.

7. 각 당사국은 문의처가 각 당사국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문의에 답변하고 양식 및 서류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며, 그 기간은 요청의 성격 또는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6.7조

사전심사결정

1. 무역업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 원산지 또는 그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에 관하여 사전심사결정서를 자국의 관세 당국을 통하여 발급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의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품목분류 및 그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에 관한 자국의 사전심사결정을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3.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사안에 관한 각국 법령의 변경에 대한 정기적 갱신을 그들의 양자 대화에 포함한다.

제6.8조

데이터, 서류 및 자동화

1. 각 당사국은 데이터 및 서류 요건이 다음과 같이 채택되거나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 가.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목적으로 할 것, 그리고
 - 나. 무역업자 및 운영자의 준수 시간과 비용의 감축을 목표로 하는 방식일 것
2. 각 당사국은
 - 가. 세관 이용자가 전자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 나. 전자적 또는 자동화된 위험관리 시스템을 이용한다.
 - 다. 자국 관세당국이 징수하고 수입 및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전자적 납부를 허용한다.
 - 라. WCO 데이터 모델에 따라 수입 및 수출 데이터의 공통 기준 및 요소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 마. WCO 를 통하여 개발된 기준, 권고, 모델 및 방법을 적절하게 고려한다. 그리고
 - 바. 정부 간 데이터의 전자적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WCO 데이터 모델 및 관련 WCO 권고와 지침에서 얻은 일련의 공통적인 데이터 요소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 시스템의 개발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6.9조 단일창구¹

1. 각 당사국은 무역업자가 상품의 수출, 수입 및 통과를 위한 서류 또는 데이터 요건을 단일 반입 지점을 통하여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 한 개의 단일 창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모든 수입, 수출 및 통과 거래를 포괄하도록 자국의 단일 창구 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 운영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¹ 이 조는 맨섬(Isle of Man)이 이 조에 따라 단일 창구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그에 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국이 단일 창구 시스템을 통하여 상품 또는 상품 선적물에 대한 서류 또는 데이터를 접수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긴급한 상황이나 자국의 관세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에 명시된 그 밖의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 상품 또는 상품 선적물에 대하여 동일한 서류 또는 데이터를 요청하지 않는다. 각 당사국은 전자 사본이 제공되는 경우 종이 서류가 요구되는 범위를 최소화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단일 창구 시스템을 이용하는 인에게 상품의 반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알릴 수 있는 능력을 그 단일 창구 시스템의 기능에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단일 창구 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서
 - 가. 적절한 경우, 데이터 요소에 대한 WCO 데이터 모델을 통합한다. 그리고
 - 나. 다른 쪽 당사국의 단일 창구 시스템과 양립 가능한 수입, 수출 및 통과 기준 및 데이터 요소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6. 양 당사국은 우수 관행 및 양국의 단일 창구 시스템 간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행 경험의 공유를 통하여 각국의 단일 창구 시스템의 개발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6.10조

불복청구절차

1.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과 그 밖의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의 결정에 관하여, 그러한 결정의 대상이 된 관련 인이 그 결정에 대한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에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당사국은 불복청구가, 사법당국이나 행정재판소가 될 수 있는 상위 독립기관에 의한 재심사에 앞서, 동일한 기관, 그 감독 당국 또는 사법 당국에 의하여 먼저 심리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대한 재심사 당국의 요청에 따라, 행정적 재심사를 수행하는 당사국에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행정적 재심사를 수행하는 당사국에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정보를 비

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11조

비밀 유지

1. 제6.10조에 따라 요청된 경우를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국의 인 또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당국에 제공한 어떠한 정보도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비밀 또는 제한적인 성격으로 취급된다. 이는 공식적인 비밀엄수 의무의 대상이 되고, 이를 받는 당사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유사한 정보에 주어지는 보호를 받는다.
2. 개인 자료는 그 자료를 받는 당사국이 자료를 제공하는 당사국에서 그 특정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과 최소한 동등한 방식으로 그러한 자료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만 교환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인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적용 가능한 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어떠한 요건도 요구하지 않는다.
3.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이를 제공하는 인 또는 당국의 명시적 허락 없이, 이를 받은 당사국의 당국에 의하여 제공된 것 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4.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국의 명시적 허락을 받은 경우 외에는,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법적 절차와 연계하여 그것을 받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할 의무가 있거나 권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인에게도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되지 않는다. 그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사전에, 그러한 공개를 통보받는다.
5. 당사국의 당국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인에게 법적 절차와 연계된 정보 공개의 모든 가능성을 통보한다.
6. 요청하는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인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제3자 또는 그 밖의 당국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신청하는 경우,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고 개인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이용 가능한 조치를 적절한 경우 언제나 사용한다.

제6.12조
수수료 및 부과금

1. 관세와 제2.3조(정의)에 따라 관세의 정의에서 제외된 항목 외에,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하여,

- 가. 수수료 및 부과금은 해당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 또는 그러한 수입 또는 수출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형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 나. 수수료 및 부과금은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
- 다. 수수료 및 부과금은 종가세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 라. 수수료 및 부과금은 영사서비스에 관하여 부과되지 않는다.
- 마.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정보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매체를 통하여, 그리고 실행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공식적인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표된다. 이 정보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 또는 부과금이 부과된 이유, 담당 당국, 적용될 수수료 및 부과금, 그리고 지급될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다. 그리고
- 바. 새로운 또는 개정된 수수료 및 부과금은 마호에 따른 정보가 공표되고 용이하게 이용 가능해지기 전까지 부과되지 않는다.

제6.13조
선적전검사

어떠한 당사국도 선적전검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것의 이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6.14조

통관사후심사

1. 상품의 반출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 가. 관세법, 규정 및 절차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통관사후심사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나. 적절한 선별 기준을 포함할 수 있는 위험에 기반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수행한다.
 - 다. 투명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수행한다. 심사가 수행되고 확실한 결과가 달성된 경우, 그 당사국은 자신의 기록이 심사된 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 결과에 대한 이유 및 심사된 인의 권리와 의무를 통보한다. 그리고
 - 라.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위험관리 적용 시 통관사후심사의 결과를 이용한다.
2. 양 당사국은 통관사후심사에서 획득된 정보가 추가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6.15조

관세평가

관세평가협정은, 관세평가협정 제20조 및 부속서 3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유보 및 선택권을 제외하고,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제6.16조

관세 협력

1. 양 당사국은 관세 및 관세 관련 사안에 대해서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국제기구가 이와 연계해서 행한 작업을 고려하여, 관세 사안에서의 무역 원활화 조치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한다. 이는 새로운 관세 절차의 시험을 포함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은 상품의 합법적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며,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통관 기술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전산화 시스템에 관한 전문성을 교환한다.

4. 양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가.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에 대한 관세 관련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 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무역에 사용된 문서 및 자료 요소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

나. 관세분석소와 과학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분석 방법의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

다. 세관 직원을 교환하는 것

라. 관세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관세 관련 사안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조직하는 것

마. 무역 및 비즈니스 공동체와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

바.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수입 상품의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원산지 결정에 상호 지원하는 것

사. 수입, 수출, 재수출, 통과, 환적 및 그 밖의 통관절차에 대하여, 그리고 특히 위조품에 대하여, 관세 당국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집행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아. 무역을 원활히 하면서, 모든 지역으로부터 양 당사국으로 수입, 환적 또는 통과되는 해상화물과 그 밖의 선적물의 보안을 증진하는 것. 양 당사국은 강화되고 확대된 협력의 목적이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1) 국제 무역의 물류망을 확보하기 위한 세관 관련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 그리고

2) 가장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화물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적절히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는 모든 다자간 포럼에서 입장을 조율하는 것

5. 양 당사국은 그들 간 기술 협력이 이 협정에 규정된 의무의 준수를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무역원활화를 성취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관세와 관련 분야에서 협력 조치의 범위, 시기 및 비용에 관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양국의 관세 행정기관을 통하여 합의한다.

6.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각국의 관세 행정기관과 그 밖의 국경 관련 당국을 통하여, 심화된 공동 행동이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고 공유된 다자간 목적을 증진할 분야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 WTO 및 WCO에서의 관련 활동을 포함한 무역원활화에 관한 관련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검토한다. 양 당사국은 관세 및 무역원활화 분야의 국제기구, 특히 WTO 및 WCO에서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공통의 입장을 수립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7. 양 당사국은 이 장,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그들 각국의 관세법 또는 규정의 이행 및 집행에서 서로 지원한다.

제6.17조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

1. 양 당사국은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9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의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6.18조

관세 접촉선

1. 양 당사국은 이 장과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지정된 접촉선의 목록을 교환한다.
2. 접촉선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운영사안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사안이 접촉선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사안은 이 장에 언급된 관세위원회에 회부된다.

제6.19조

관세위원회

1. 제15.2조(전문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관세위원회는 이 장과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고, 그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관세위원회는 제15.1조(무역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2. 관세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관세 및 무역원활화 사안,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3. 관세위원회는 의사규칙을 채택하고 매년 회합하며, 회합장소는 양 당사국 간 교대로 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관세위원회는 무역원활화, 품목분류, 상품의 원산지

및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을 포함하여, 특히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7조 및 제8조와 관련하여, 이 장과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에 포함된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회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관세위원회는, 이 장과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에 수립된 메커니즘의 공동의 목적 달성과 건전한 기능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결정, 권고 또는 의견을 제정할 수 있다.”